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고 서

- 1. 발 의 자 : 송미애 의원 등 9인
-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 : 2019년 2월 26일

O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7일

3. 제정이유

○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체계적 조사와 보존활동을 지원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O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조사와 보존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- O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(안 제5조)
- O 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(안 제6조)
- O 위원회의 보존 결정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보존 및 관리 (안 제7조)
- O 독립운동 유적 보호·보존·보급 또는 선양사업의 지원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O 금번 제정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체계적 조사와 보존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
- 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첫째, 안 제5조에서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
 - 둘째, 안 제6조에서는 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
 - 셋째,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보존 결정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
 - 넷째, 안 제9조에서는 독립운동 유적 보호·보존·보급 또는 선양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금번 제정조례안은 독립운동 유적의 발굴 및 보존을 규정 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고,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관리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